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5505 지방세세액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2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4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가목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생시행계획이 고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세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공장건설 등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고와 같이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판사 장 래 아

판사 정 한 근